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555

발의연월일: 2020. 10. 16.

발 의 자:이개호·서영교·윤재갑

김병기・홍성국・송갑석

위성곤 • 김승남 • 신정훈

주철현 · 강병원 · 서삼석

의원(12인)

제안이유

정부의 구제역 예방주사 명령 등 가축의 소유자등이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명령의 내용 위임 근거를 마련하여 명령의 이행기준과 확인 방법 등을 명확하고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며, 「축산법」에 따른 허가대상 이하의 소규모 농가(가축사육시설이 50제곱미터 이하)에 대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하여 야생조류 등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많은 위험시기에 철새도래지와 같은 위험지역에 대하여 교통차단, 출입통제 또는 소독조치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도태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구제역 예방주사 명령 등 가축의 소유자등이 준수해야 할 구체적 인 명령의 내용 위임 근거 마련(안 제15조제1항)

가축 소유자등의 준수사항, 축종별 면역형성 확인방법 등 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가축에 대하 여 해당하는 주사 명령 등 조치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명령의 투명성을 제고함.

나. 「축산법」에 따른 허가대상 이하의 소규모 농가(50제곱미터 이하)에 대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기준 마련(안 제17조제1항 단서신설)

현재 50제곱미터 이상 허가대상 농가에 대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기준만 있어 방역사각 지대인 50제곱미터 이하 가축 축사에 대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기준을 마련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을 도모함.

- 다. 가축전염병 위험시기 및 지역에 대한 통제 추가(안 제19조제1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야생조류 등)가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기간 등)과 일정한 범위에 대하여 교통차단, 출입통제 또는 소독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함.
- 라. 정부의 도태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8조제1항제3호의2).

법률 제 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가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를 "가축 소유자등의 준수사항, 축종별 면역형성 확인방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가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구제역 예방백신 주사 명령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처분받은 가축의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수의사를 지정하여 구제역 예방백신 주사를 하게 하거나 그 주사 과정을 확인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구제역 예방백신 주사 및 혈청검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해당 가축의 소유자등이 부담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50제곱미터 이하의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 자등은 울타리·분무용소독설비·신발소독조·방조망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가축전염병이"를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4호"를 "제4호 또는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인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우려가 높은 시기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일정한 범위의 지역에 들어오는 사람, 가축 또는 시설출입차량에 대하여 교통차단, 출입통제 또는 소독을 하는 조치제48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의2. 제21조제2항에 따라 도태한 가축의 소유자. 다만,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계약사육 농가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계약사육농가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57조제4호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은 조 제2항"으로 한다.

제60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혂 행

제15조(검사·주사·약물목욕·면역 | 제15조(검사·주사·약물목욕·면역 요법 또는 투약 등) ① 농림축 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 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가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 치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② ~ ③ (생 략) <신 설>

정 안 개

요법 또는 투약 등) ① -----

---가축 소유자등의 준수사항, 축종별 면역형성 확인방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등에 게 가축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 1. ~ 3. (현행과 같음)
- ② ~ ③ (현행과 같음)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구제역 예방백신 주사 명령을 위반하 여 과태료를 처분받은 가축의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수의사를 지정하여 구제역 예방백신 주 사를 하게 하거나 그 주사 과 정을 확인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구제역 예방 백신 주사 및 혈청검사 등에

혅 행 개 정 아 드는 비용은 모두 해당 가축의 소유자등이 부담한다. 제17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 ① 제17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 ①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 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소독설비 및 방 역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단 서 신설> 만, 50제곱미터 이하의 가축사 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은 울타리·분무용소독 설비·신발소독조·방조망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 ⑪ (현행과 같음) ② ~ ① (생 략)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① 시장・군수・ 폐쇄명령 등) ① -----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하 것을 막기 위하여 농림축산식 거나 ----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라 이동 ---. ----제4호 또는 제6호--이 제한된 사람과 차량 등의 소유자는 부득이하게 이동이

혀 행 개 정 아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 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동 승인신청을 받은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농림축산식 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을 승인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인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우 려가 높은 시기에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 가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 심으로 농림축산<u>식품부장관</u> 이 정하는 일정한 범위의 지 역에 들어오는 사람, 가축 또 는 시설출입차량에 대하여 교통차단, 출입통제 또는 소 독을 하는 조치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48조(보상금 등) ① 국가나 지 제48조(보상금 등) ① -----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아 혅 행 개 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21조제2항에 따라 도 태한 가축의 소유자. 다만,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 사업자인 경우에는 계약사육 농가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 여 계약사육농가에 지급하여 야 한다. 4. ~ 6. (생략) 4. ~ 6.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57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1. ~ 3의3. (생략) 1. ~ 3의3. (현행과 같음) 4. 제19조제1항(제28조에서 준 4.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 포함한다)제1 제4항까지 또는 제27조에 따 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은 조 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제2항----5. ~ 9. (생략) 5. ~ 9. (현행과 같음) 제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제60조(과태료)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현 행	개 정 안
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u>.</u>
1. ~ 5의9. (생 략)	1. ~ 5의9. (현행과 같음)
<u><신 설></u>	6.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u>6.</u> (생 략)	<u>7.</u> (현행 제6호와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